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가소5944347 손해배상(국)

원 고 1. 강대선

2. 강현주

3. 김다솜

4. 김성곤

5. 김영경

6. 김영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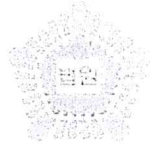
7. 김은실

8. 류경수



9. 류종하
10. 민재홍
11. 박경신
12. 박준영
13. 배기태
14. 변성기
15. 서원준
16. 운영민
17. 정준기
18. 정현철
19. 조성태





20. 한성농

21. 한정동

22. 홍미라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가연

피 고

대한민국

서울 서초구 서초3동 서울고등검찰청 소송사무제1과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상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공단 담당변호사 부효준, 유일한, 이재형, 이

윤종, 길진오, 구정택, 유일한, 김민정, 서규영

소송수행자 김영태, 김재학, 김호영, 윤상훈(서울고등검찰청)

소송수행자 최종석, 반인경, 김효주(국가정보원)

소송수행자 강상문, 강봉준, 서민선, 심현진, 문종탁, 박동진, 한효

진, 황지환(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소송수행자 김태욱, 손용일, 김상범(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소송수행자 문성용, 김미례, 황종현(대전지방검찰청)

소송수행자 정인호, 정정욱, 이윤석, 안치훈, 장용석(서울남부지방

검찰청)





변론종결 2018. 11. 29.
판결선고 2018. 12. 1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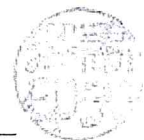
이 유

- 원고들은 피고가 수사 대상 사건과의 연관성을 제대로 소명하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원고들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하여 제공 요청 권한을 남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위법행위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

판사

우광택

우 광 택





정본입니다.

2018.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보 김은주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